

붙임 3-2 공결 관련 Q&A (학생용)

Q1 공결 신청 시 유의사항

- 불필요한 질병 공결 신청 지양 및 출석 시수 등 본인 확인
 -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 무분별한 질병 공결 신청 지양
 - 강좌 수강·출석·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이 공결 신청 가능 범위·출석 시수 등 반드시 확인
 - 문서 위조, 허위 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Q2 공결 신청·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대학행정시스템 '공결신청'에 공결 신청사항 등록 → 소속 학부(과) 및 대학 검토·승인 → 공결승인 내역서를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출석부 최종 반영 확인
 - ※ 전자출결시스템에서 이미 결석 처리된 이후에 공결이 승인된 경우, 전자출결시스템에는 계속하여 '결석'으로 유지됩니다. 공결승인 내역서를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하고, '공결'로 변경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공결 승인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대학행정시스템 '공결신청'에서 신청·승인·반려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결 신청 내역에 대해 승인·반려 시 자동 알림
 - [1단계] 앱(myUOS+) PUSH 알림
 - [2단계] 카카오톡 알림톡(앱 미설치한 경우)
 - [3단계] 문자(카카오톡 미설치한 경우)

Q4 질병 공결의 경우 승인/불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질병 공결의 경우 병명(의사소견 등)이 기재되어 있는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인적사항, 진료일(통원일)만 단순 기재되어있는 진료확인서(또는 통원확인서) 등은 불허
 - 의사소견 또는 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질병 공결은 학생 수업시간표, 질병 공결의 패턴 등을 승인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불허를 결정합니다.
 - ※ 법정 전염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승인
 - ※ 응급실 진료, 입원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 증빙(진단서, 응급실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자료가 필요하고, 그 외 경우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로 병명(의사소견 등) 확인이 가능해야 공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5 총장이 허가한 행사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교내 행사 주관 부서에 문의한 후 해당 시 공결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 본교가 아닌 타 기관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경우 학교 내 행사 주관 부서가 있어야 학교 공식 행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학교 내 주관 부서가 없이, 학생이 직접 행사에 신청하여 참여하는 경우는 '총장이 허가한 행사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기타 사유로 부득이하게 결석하는 경우'로 담당교원의 재량 승인 사항에 해당합니다. 전자 공결 대상이 아니며, 학생이 직접 담당 교수님께 신청해야 합니다.

Q6 동영상(이러닝)으로 진행되는 교과목도 공결 인정이 가능한가요?

- 동영상(이러닝) 수업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맞추어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 반복 학습 및 사후 학습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결은 불인정합니다. 다만, 입원이나 전염병(코로나, 독감 등) 감염으로 인한 격리 등 동영상 수업에 장기간 참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결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Q7 공결이 승인 되었음에도 교과목 담당교원이 최종 불허할 수 있나요?

- 공결은 학생이 결석했어도 출석으로 인정 가능한 사유에 대해 학칙 및 학사내규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하지만, 담당교원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담당교원의 이의신청을 통해 공결 승인권자는 재검토 후 최종 불허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교과목 특성상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담당교원이 공결을 불허함을 사전에 공지한 경우, 전자 공결이 승인되었더라도 최종 불허될 수 있습니다.
- 학교 행사 참가 시 공결 가능함을 안내받은 경우라도 (행사 부서는 교과목 특성별 공결 사항 확인 불가능하므로),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이 사전에 공결을 불허한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교과목 담당교원께 공결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Q8 공결 승인 내역은 전자출결시스템에 언제 반영되나요?

- 공결 승인 내역은 승인일 다음날 전자출결시스템에 반영됩니다. (당일 반영안됨)
※ 대학행정시스템과 전자출결시스템은 별도 운영 시스템으로 DATA는 매일 1회 연동

Q9 공결 승인 내역은 전자출결시스템에 모두 자동으로 '공결'로 반영되나요?

- 전자출결시스템에 교과목 담당교원이 직접 '결석' 처리하기 전 공결 승인 건의 경우, 전자출결시스템에 모두 자동으로 '공결'로 반영됩니다.
- 하지만 **전자출결시스템에 교과목 담당교원이 직접 '결석'으로 처리한 경우, 전자출결시스템에는 계속하여 '결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결승인 내역서를 교과목 담당교원께 제출하고, '공결'로 변경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 2024. 10. 2. : 공결 신청

2024. 10. 4. : 수업진행. 전자출결시스템에 담당교원이 직접 '결석' 처리

2024. 10. 4. : 공결 승인

2024. 10. 5. : 전자출결시스템에 '결석'으로 유지

→ 공결승인 내역서를 교과목 담당교원께 제출

→ '공결'로 변경 처리(교원)

※ 미반영 시 전자출결시스템에서 출석 이의신청 통하여 반영 요청 가능

Q10 질병 공결 수업시수 1/3 이내 적용 예시입니다.

2025. 1학기에 이루매 학생이 질병 공결을 사용한 날이 다음과 같을 때,

3. 7.(금): 감기(질병③)

3. 14.(금): 장염(질병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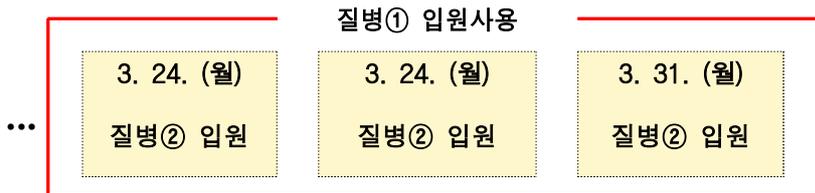
3. 21.(금) ~ 4. 11.(금): 입원(질병②)

① 금요일 1~3교시: 000개론



- 000개론(금요일 수업)은 **질병공결 허용기간 모두 사용**
 - 3. 7. ~ 4. 4. : 15시간 공결(수업시수의 1/3 해당)
 - 3. 7., 3. 14. : 질병③ 2일 공결(학기 중 최대 2일)
- **4. 11.(금)**의 경우, 수업시수 1/3(15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결석**

② 월요일 1~3교시: □□□의 이해



- □□□의 이해(월요일 수업)의 **질병공결 9시간 사용**
 - 3. 24. ~ 3. 31. : 9시간 공결
- □□□의 이해(월요일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질병공결: 6시간(15시간 - 9시간)

③ 단, 이루매 학생은 질병③을 2일(회) 사용하였으므로 이후 2025학년도 1학기 모든 수업에 대해 질병③ 추가 사용 불가